

Client Alert

October 2018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요:

Brian Chia
Partner
+603 2298 7999
Brian.Chia@WongPartners.com

Kherk Ying Chew
Partner
+603 2298 7933
KherkYing.Chew@WongPartners.com

Eddie Chuah
Partner
+603 2298 7939
Eddie.Chuah@WongPartners.com

Adrian Wong
Senior Associate
+603 2298 7952
Adrian.Wong@WongPartners.com

기 소 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수정)법안 2018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수정)법안 2018(Anti-Corruption Commission (Amendment) Bill 2018)이 2018 년 3 월 26 일에 말레이시아 국회에 처음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2018 년 5 월 4 일에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수정법 2018 ("반부패위원회수정법")으로 관보에 실렸습니다. 2018 년 9 월 20 일자의 관보에 따르면, 반부패위원회수정법의 4 조(기업의 책무에 대해 규제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반부패위원회수정법은 2018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에만 부과되던 법적 의무의 적용 대상이 금융 서비스법 2013 (Financial Services Act 2013), 이슬라믹 금융 서비스법 2013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 캐피탈 마켓 및 서비스법 2007 (Capital Markets and Services Act 2007), 라부안 금융 서비스 및 증권법 2010 (Labuan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2010), 협동조합법 1993 (Cooperative Societies Act 1993)등과 같은 다양한 법규들을 근간으로 인허가 받고, 등록되고, 설립된 모든 금융 기관들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에게 승인되었던 부분적 면책은 더 이상 허가되지 않습니다.
- 이전에는 위원회는 공공단체의 직원에게만 동 직원의 과거 및 현재 급여 및 기타 다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의 동산의 소유하고, 보유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법은 공공단체의 직원 뿐 아니라 '누구에게든' 동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반부패위원회수정법에는 위원회가 득한 서류들은 기타 다른 성문법에 반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동 조항이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을 근거로 하는 서류들은 법원에서 채택할 수 없는 점도 무효화할 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다려 온 기업의 책무를 규제하는 조항들은 금번에는 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들이 기업에 미칠 중대성을 고려하여, 동 조항들이 향후 시행되면 기업에 미칠 영향들을 다음 단락에 정리하였습니다.



기업의 책무

기업의 책무에 대한 조항들은 영국의 뇌물규제법(Bribery Act)을 모델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상업조직(Commercial organization,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현지 기업 및 외국 기업 모두 포함)과 연관된 개인이 본인이 속한 조직을 위해 사업 거래를 얻고, 유지하는 대가로, 혹은 사업 수행에 이익을 얻기 위한 대가로 불법적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에 대해 조직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됩니다.

"연관된 개인(associated person)"은 이사들, 직원들, 그리고 제 3자인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포함됩니다.

법은 상업 조직에 엄격한 책무를 부과합니다. 즉, 사업 조직은 연관된 개인의 부패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은 연관된 개인의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사내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상업 조직이 본 범법행위에 연루된 경우, 이사들, 직원들 및 관리경영진은 해당 범법행위는 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사의 동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않는 한, 이사들, 직원들, 관리경영진은 동일한 범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잠재적 패널티는 가혹합니다. 제공한 향응의 최소 10 배(금전적 환산이 가능한 경우)와 RM 1 million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거나, 혹은 최대 20 년의 징역형, 혹은 벌금과 징역형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업 조직과 관리경영진은 연관된 개인이 범할 수 있는 불법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선물 및 접대 제공에 대한 사규 및 기타 반부패 사규들을 검토하여 조직의 책임이 면책될 정도로 충분히 견고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